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
「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」 과제제안요구서(RFP)

과제제안요구서명 (세부사업명)	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(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)	공모유형	품목지정형 (middle-up)	기술료 납부 대상	O
사업유형 해당여부	해당사항 없음				

▶지원목적

○ 글로벌 선도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치매 조기 예측 및 진단기술 실용화(첨단기술 등)

▶지원대상

○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
○ 기업이 연구개발기관(주관 또는 공동)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(미참여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)

○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비 (1차년도)	협약 형태	선정예정 과제수
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328백만원 이내/년 (246백만원)	다년도	1

※ 1차년도 연구기간 9개월 이내,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(9개월) 최대 지원 금액임

※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▶성과목표 및 연구개발내용

지원분야	최종목표	연구개발내용
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	① 논문 1편과 실용화·사업화 1건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7점 이상 ※ 성과실적 계산 기준은 특기사항 참조	○ 치매 **예측·조기진단 실용화 기술**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

※ 제시된 연구목표는 최소 달성목표이며, 연구자가 이외 추가성과 제안 가능

※ 본 RFP에 지원할 경우, TRL 7단계 이상의 연구개발 수행 권고

▶특기사항

① 일반사항

○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3책5공)에 해당함

RFP 공시

② 성과관련

❍ 아래 성과실적 계산기준 표를 참고하여, 과제종료 시까지 논문 1편과 실용화·사업화 1건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7점 이상 달성 필수

※ 교류 성과는 최대 3점으로 제한하며, 논문, 특허, 실용화·사업화 성과는 동일 항목의 성과를 여러 건 창출하는 것도 가능

< 성과실적 계산 기준 >

구분	성과항목	점수
논문	SCI(E) 논문	1점
	SCI(E) 상위 10% 이내의 경우	2점
특허	국내·국외 출원	0.5점
	국내 등록	2점
	국외 등록	3점
교류	국제 공동 컨퍼런스 개최	1점
	인력 교류	1점

구분	성과항목	점수
실용화 · 사업화	GMP 환경에서의 시제품 제작	3점
	IDE 승인	4점
	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완료	
	규제당국 품목허가	5점
	개발 기술 매출 발생	6점

-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급 연구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
- 국제공동 논문의 경우,
  - 최소 1건 이상의 논문 성과는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, 상대국가의 연구책임자는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, 교신저자로 동시에 포함되어야 함
  - Review(종설) 논문의 경우,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SCI(E) 상위 10% 이상 논문에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와 상대국 연구책임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경우만 성과로 인정
- 논문, 특허성과에 해당 사업의 사사 표기 필수
- 인력교류는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국제 공동 컨퍼런스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연구회의로서 단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는 성과인정이 불가하며, 전일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포스터, 프로그램 안내서 등 증빙제출 필요
- 임상시험결과보고서의 경우, 규제당국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만 인정
- 성과는 과제 최종보고서에 제출된 성과까지 인정(증빙포함)

③ 해외연구개발기관 관련

❍ 해외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, 2개 이상 복수 기관 참여 가능

-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학연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
- 해외연구개발기관이 지원 기업과 자회사 등의 관계인 경우는 불가
-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 및 우수한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(특허, 품목허가, 기술수출, 매출액, 협력네트워크/활동 등 구체적 기술)
- 해외 비임상·임상시험을 위한 CRO 등 단순 용역기관은 해외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하며, CRO 비용 또한 본 과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 불가(본 RFP는 국제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, RFP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지향함)

❍ 해외연구개발기관 파트너(상대국 연구책임자)

- 본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기관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해외연구기관 소속 책임자로, 파트너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역량에 대해 작성

❍ 해외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활동

- 주관연구개발기관(또는 주관연구책임자)과 해외연구개발기관 간 현재까지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함께 제시할 것(인력교류, 세미나, 기술미팅, 공동학회발표 등)

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국내외 기관 간 공동연구 역할분담 계획, 기관 간 연구성과 분배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제시

-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,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개발기관 및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가 명시되어있고, 해외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 부분(현금/현물 등), 해외협력기관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, 역할분담 등이 반영된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(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담계획이 기재되어있고, 이를 양측 연구책임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서명이 포함된 LoI) 제출
- 가능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마일스톤(milestone, 정량지표) 제시
- 기존 국제협력(교류협력, 공동연구 등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,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사업과의 성과 연계·확대 방안 제시

※ 과제가 선정될 경우, 국제공동연구 결과로 창출된 성과 등의 소유권·사용권·기술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연구 개시 이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(국내 연구개발기관장 및 해외 연구개발기관장 서명 날인 필수)

▶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공고안내서 '[붙임 4] 가감점 부여기준' 참고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	**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(20)**	○ **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(10)** - 연구 추진 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한가?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?
		○ **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 목표 실현 가능성 (10)**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한가?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하고,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?
	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20)	○ **국내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(10)** -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진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유관 연구 수행경험 및 성과(논문, 기술이전, 사업화 실적 등)를 보유하고 있는가?
		○ **국외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및 기여도 (10)** - 국외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는가? - 협력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, 국외 연구자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가?
	3.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·협력 가능성 (40)	○ **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(15)** - 해당 연구개발이 국제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가? - 국외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보유한 선도 기술·역량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가?

RFP사본

		○ **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(10)** - 국내·외 참여 기관 간 협력 분담이 적절하게 나뉘어 있는가?
		○ **국내-국외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여부 및 공동연구 수행의지 (15)** 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적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? - 국외 연구기관이 연구비, 인프라 등을 충분히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?
	4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20)	○ **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5)** 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결과를 제시하였는가?
		○ **연구결과의 파급효과 (5)** - 국내 연구 기술 및 학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 -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※ 공모 지원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

RFP사전공개

과제제안요구서명 (세부사업명)	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(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)	공모유형	품목지정형 (middle-up)	기술료 납부 대상	O
사업유형 해당여부	해당사항 없음				

▶지원목적

❍ 국제적 협력연구를 통한 글로벌 치매 치료기술 개발

▶지원대상

❍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
❍ 기업이 연구개발기관(주관 또는 공동)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(미참여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)

❍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비 (1차년도)	협약 형태	선정예정 과제수
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	609.2백만원 이내/년 (456.9백만원)	다년도	1

※ 1차년도 연구기간 9개월 이내,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(9개월) 최대 지원 금액임

※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▶성과목표 및 연구개발내용

지원분야	최종목표	연구개발 내용
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 개발	① 논문 1편과 실용화·사업화 1건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9점 이상 ※ 성과실적 계산 기준은 특기사항 참조	○ 비임상 이상의 치매 치료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 - 비임상 단계의 연구개발 진행이 가능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 ※ 물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보유 필수

※ 제시된 연구목표는 최소 달성목표이며, 연구자가 이외 추가성과 제안 가능

▶특기사항

① 일반사항

❍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3책5공)에 해당함

② 성과관련

❍ 아래 성과실적 계산기준 표를 참고하여, 과제종료 시까지 논문 1편과 실용화·사업화 1건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9점 이상 달성 필수

※ 교류 성과는 최대 3점으로 제한하며, 실용화·사업화 성과는 항목당 1회로 제한(GLP 시험 완료, Pre-IND 미팅 완료, 임상1상 IND 승인은 각 1회만 인정)

< 성과실적 계산 기준 >

구분	성과항목	점수
논문	SCI(E) 논문	1점
	SCI(E) 상위 10% 이내의 경우	2점
교류	국제 공동 컨퍼런스 개최	1점
	인력 교류	1점

구분	성과항목	점수
실용화 · 사업화	임상 단계 진입에 필요한 GLP 시험 완료	3점
	주요 규제기관 Pre-IND 미팅 완료	4점
	임상 1상 IND 승인	8점

-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급 연구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
- 국제공동 논문의 경우,
  - 최소 1건 이상의 논문 성과는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, 상대국가의 연구책임자는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, 교신저자로 동시에 포함되어야 함
  - Review(종설) 논문의 경우,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SCI(E) 상위 10% 이상 논문에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와 상대국 연구책임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경우만 성과로 인정
- 논문 성과에 해당 사업의 사사 표기 필수
- 인력교류는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국제 공동 컨퍼런스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연구회의로서 단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는 성과인정이 불가하며, 전일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포스터, 프로그램 안내서 등 증빙 제출 필요
- 실용화·사업화 성과는 GLP 시험 결과보고서, Pre-IND 미팅 결과보고서, IND 승인서 등 적격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(본 RFP에 지원한 물질과 관련된 내용임을 필수적으로 증빙해야 함)
- 성과는 과제 최종보고서에 제출된 성과까지 인정(증빙포함)

③ 해외연구개발기관 관련

❍ 해외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, 2개 이상 복수 기관 참여 가능

-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학연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
- 해외연구개발기관이 지원 기업과 자회사 등의 관계인 경우는 불가
-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 및 우수한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(특허, 품목허가, 기술수출, 매출액, 협력네트워크/활동 등 구체적 기술)
- 해외 비임상·임상시험을 위한 CRO 등 단순 용역기관은 해외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하며, CRO 비용 또한 본 과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 불가(본 RFP는 국제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, RFP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지향함)

❍ 해외연구개발기관 파트너(상대국 연구책임자)

- 본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기관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해외연구기관 소속 책임자로, 파트너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역량에 대해 작성

❍ 해외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활동

- 주관연구개발기관(또는 주관연구책임자)과 해외연구개발기관 간 현재까지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함께 제시할 것(인력교류, 세미나, 기술미팅, 공동학회발표 등)

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국내외 기관 간 공동연구 역할분담 계획, 기관 간 연구성과 분배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제시

-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,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개발기관 및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가 명시되어있고, 해외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 부분(현금/현물 등), 해외협력기관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, 역할분담 등이 반영된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(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담계획이 기재되어있고, 이를 양측 연구책임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서명이 포함된 LoI) 제출
- 가능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마일스톤(milestone, 정량지표) 제시
- 기존 국제협력(교류협력, 공동연구 등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,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사업과의 성과 연계·확대 방안 제시

※ 과제가 선정될 경우, 국제공동연구 결과로 창출된 성과 등의 소유권·사용권·기술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연구 개시 이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(국내 연구개발기관장 및 해외연구개발기관장 서명 날인 필수)

▶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공고안내서 '[붙임 4] 가감점 부여기준' 참고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	**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(20)**	○ **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(10)** - 연구 추진 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한가?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?
		○ **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 목표 실현 가능성 (10)**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한가?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하고,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?
	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20)	○ **국내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(10)** -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진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유관 연구 수행경험 및 성과(논문, 기술이전, 사업화 실적 등)를 보유하고 있는가?
		○ **국외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및 기여도 (10)** - 국외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는가? - 협력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, 국외 연구자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가?
	3.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·협력 가능성 (40)	○ **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(15)** - 해당 연구개발이 국제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가? - 국외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보유한 선도 기술·역량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가?

RFP 사업

		○ **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(10)** - 국내·외 참여 기관 간 협력 분담이 적절하게 나뉘어 있는가?
		○ **국내-국외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여부 및 공동연구 수행의지 (15)** 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적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? - 국외 연구기관이 연구비, 인프라 등을 충분히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?
	4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20)	○ **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5)** 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결과를 제시하였는가?
		○ **연구결과의 파급효과 (5)** - 국내 연구 기술 및 학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 -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※ 공모 지원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

RFP사전공시